

##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등 관련업무 안내입니다.

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아래 내용과 같이 관련기관에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여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### 아 래

#### 1. 관련 기관 - 식품의약품안전처

※ 2013.3.25일자로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. 따라서 실제 영업신고 등은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.

-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(02-2640-5018)
-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(02-2110-8055)
-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(42-480-8710)
-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(051-602-6100)
-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(053-592-7133)
-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(062-602-1300)

#### 2. 구비서류

- ①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서
- ② 영업장(사무실) 시설내역 및 배치도 : 가로, 세로 실측 길이 표시 및 출입구, 집기 표시
- ③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(본인소유 건물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)
  - 냉동/냉장창고가 있을 경우 창고 임대(이용)계약서 사본
- ④ 축산물위생교육 이수 증명(수료증 사본 제출)
- ⑤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
- ⑥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1만원(우체국에서 판매)

#### 3. 축산물위생교육

- 2014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참조

#### 4. 준수사항

-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**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**를 기록하고 그 축산물수입판매 거래내역서를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 물이 경우 관련된 수입신고필증·수입승인서·선적서 및 내용명세서 등의 사본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- 축산물위생생관리법 시행규칙12 제4호 다목을 위반한 축산물을 수입하거나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부패·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.
-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신고를 한 신고관청에 전환 품목명 등을 신고하고,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정보를 입수하였거나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·보관하여야 하며,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패·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남은 4개월은 사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.



【 상기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산하기관, 법령자료 일부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다시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】